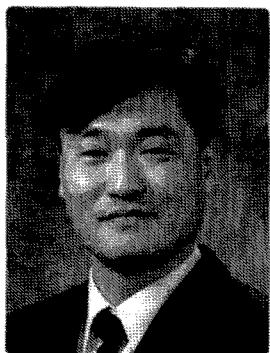


애플 컴퓨터 지식재산 분쟁의 어제와 오늘

애플 컴퓨터의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 애플 컴퓨터의 스마트 폰 지식재산 분쟁, 스마트폰 분쟁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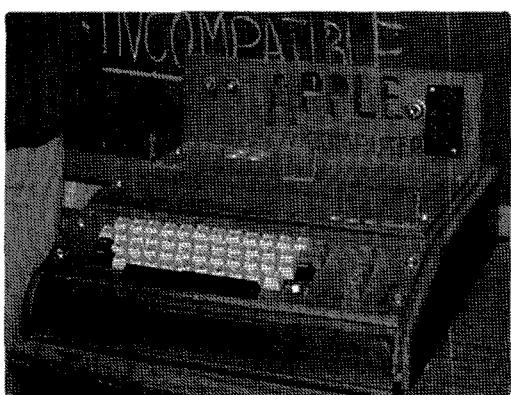
서호선

캘리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 문인이 아니면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컴퓨터를 PC로 만들고, 무선전화기를 휴대용 컴퓨터 통신장비로 진화시킨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났다. 1976년 4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허름한 창고에서 그가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 컴퓨터사를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그의 미래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애플 컴퓨터사의 스티브 잡스가 이루한 지난 30여 년간의 업적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애플 컴퓨터 창업 당시 외화를 벌기 위해 가발, 의류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밤낮으로 만들어 박리다매로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20세기로 10여 년이 지난 현재 전기전자 정보통신을 비롯한 IT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업계를 타겟으로 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대립의 양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애플 컴퓨터사가 관련되었던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들을 살펴보고, 근



〈그림 1 최초의 애플 컴퓨터〉

래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폰 지식재산권 소송의 현황을 알아본다.

애플 컴퓨터의 과거 지식재산권 분쟁

“많이 맞아 본 선수가 이길 수 있다”, 어느 권투 챔피언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애플사는 특히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공격적인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다. 2011년 현재 애플 컴퓨터사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는 미국 상표특허청 내의 심판 사건¹⁾만 해도 376건에 달한다. 그러나 애플 컴퓨터사는 과거에 자국 및 세계 각국의 기업들로부터 특허 침해로 제소 당하거나 제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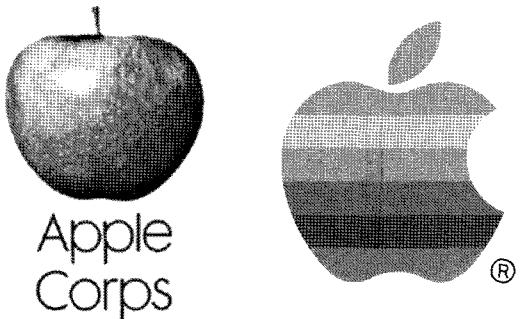
이하 과거 애플 컴퓨터사가 관여되었던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상표권 분쟁

애플사 대 애플컴퓨터 상표분쟁 (Apple Corps v. Apple Computer)

애플사(Apple Corps)는 1968년 1월 비틀스(The Beatles)에 의해 설립되었고 애플 레코드로 알려진 영국의 음반회사²⁾이다. 1978년 애플 레코드는 자사의 상표를 애플 컴퓨터사가 침해한 것으로 영국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애플 컴퓨터사의 주장은 상표의 적용범위(류)가 음반과 컴퓨터로 서로 상이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1981년 애플 컴퓨터사는 애플사에 대해 80,000\$의 손해 배상액을 지불하였다. 당시 애플 컴퓨터사는 음악 산업에 진출하지 않고 애플사는 컴퓨터 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1986년 애플 컴퓨터사에서 MIDI(musical instru-



〈그림 2 애플사와 애플컴퓨터의 상표권 분쟁 당시 로고〉

ment digital interface) 기능을 추가한 Apple II GS PC와 후속 모델로 맥킨토시가 시판되자 또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91년 애플 컴퓨터사는 2천6백50만 불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사에 지불해야 했다.

2003년 4월에는 애플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MP3 음악을 판매하는 서비스³⁾를 시작하자, 애픸사는 계약 위반으로 애플 컴퓨터사를 제소하였고, 음악영국 웨일즈 고등법원은 애플 컴퓨터가 계약에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양사는 디지털 방식으로 재제작(remaster)된 비틀스의 음원과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대립을 계속해오다가, 2010년 11월 16일 애플의 아이튠 스토어(iTune store)에서 재제작(remaster)된 비틀스의 13개 앨범이 제공됨으로써 종결되었다.

1) 미국상표특허청 검색 결과 (2011.10)
<http://ttabvue.uspto.gov/ttabvue/v?pnname=Apple%20Inc.%20%20&page=15>

2) <http://www.applecorpsltd.com/>

아이맥 도메인 상표 분쟁

1998년 7월 애플 컴퓨터사가 iMac⁴⁾을 시판하기 2개월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사는 압둘 트라야(Abdul Traya)⁵⁾라는 당시 16세의 소년은 appleimac.com 도메인을 등록하였고, 이로부터 애플 컴퓨터와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1999년 4월 애플 컴퓨터사는 트라야에게 소송비와 보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도메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압둘 트라야는 1999년 캐나다에 WestNet⁶⁾이라는 통신 서비스 회사를 창업하여 WIF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itunes.co.uk 도메인 상표권 분쟁

2000년 11월 영국의 벤자민 코헨(benjamin Cohen)은 itunes.co.uk 도메인을 등록하였다. 이 도메인은 이후 skipmusic.com 과 cyberbritain.com에 제공되었고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애플 컴퓨터사는 2000.10.23자로 영국에 iTunes 상표를 출원하여 2001.3.23자로 상표권을 받아 2004년부터 온라인 음원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에 코헨은 사용하지 않고 있던 itunes.co.uk 를 넥스터에 제공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2005년 11월 애플 컴퓨터사가 itunes.co.uk 도메인을 사용하고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취하되었다.

iPhone 상표권 분쟁

2007년 1월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다국적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는 애플 컴퓨터사의 iPhone이 자사의 VoIP(voice over internat protocol) 서비스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제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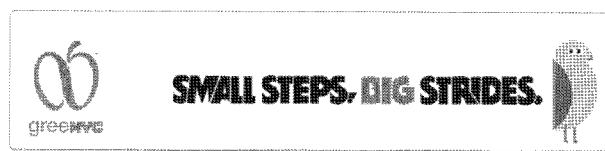


〈그림 3 Cisco Systems의 iPhone 로고〉

이 사건은 2007년 2월 21일 시스코와 애플 컴퓨터가 iPhone 상표를 같이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종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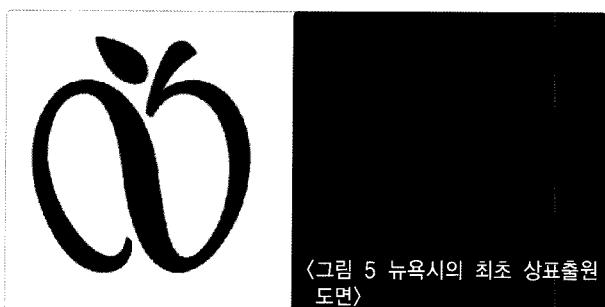
뉴욕시와 애플 컴퓨터 간의 상표권 분쟁

2008년 1월 애플 컴퓨터사는 뉴욕시가 녹색도시 캠페인⁷⁾으로 발표한 빅애플 로고가 자사의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미국상표특허청에 제소하였다.



〈그림 4 뉴욕시의 녹색도시 캠페인 로고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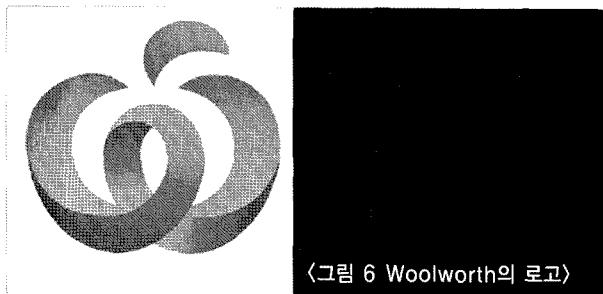
뉴욕시는 2007년 5월 14일 미국상표특허청에 상표를 출원⁸⁾하였고, 2007년 6월 27일 출원 상표에서 사과 잎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애플 컴퓨터사는 혼동을 주는 유사 상표임을 계속 주장하여 2011년 3월 현재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림 5 뉴욕시의 최초 상표출원 도면〉

호주의 Woolworths⁹⁾와의 상표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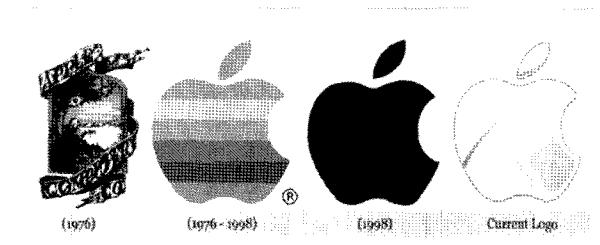
2009년 10월 애플 컴퓨터사는 호주의 수퍼마켓 Woolworth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해당 상표는 Woolworth에서 판매되는 브랜드의 전제품과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년 현재 진행 중이다.

애플 컴퓨터 상표의 변천

애플 컴퓨터사는 상표관련 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사의 로고를 변경하고 있다. 최초의 로고는 뉴톤의 사과를 상징하였으며, 빈번한 상표 분쟁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변형되는 로고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 컴퓨터 대 DOPI 상표 분쟁¹⁰⁾

2010년 3월 애플 컴퓨터사는 애플 랩톱 컴퓨터의 케이스와 가방을 제조하는 호주 중소기업의 DOPI 상표가 자사의 iPod를 거꾸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제소를 하였으나, 호주 특허청에서는 알파벳 ‘i’와 결합한 상표가 모두 애플 컴퓨터의 권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였다.

애플 컴퓨터사와 아마존 간의 ‘앱 스토어’ 분쟁

2011년 애플 컴퓨터사는 아마존(amazon.com)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폰 응용 프로그램 판매 서비스인 Appstore¹¹⁾가 자사의 서비스(Apple store)와 유사한 것을 주장하며 미국상표특허청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애플 컴퓨터사의 Appstore 상표 등록을 막기 위한 제소를 하여 2011

특허권 분쟁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분쟁

2006년 5월 16일 싱가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는 자사의 MP3 플레이어인

- 3) 애플컴퓨터의 iTunes Store <http://itunesstore.com/>
- 4) 1998년 시판된 애플컴퓨터사의 통합형 PC
- 5) <http://news.cnet.com/2100-1023-221921.html>
- 6) <http://www.westnet.ca/>
- 7) <http://www.nyc.gov/html/greenyc/html/home/home.shtml>
- 8) <http://ldr.uspto.gov/search.action?sn=77179942#>
- 9) <http://www.woolworths.com.au/wps/wcm/connect/webSite/Woolworths/>
- 10) <http://www.smh.com.au/digital-life/mp3s/apples-future-wont-be-brought-to-you-by-the-letter-i-20100312-q27r.html>
- 11) <http://www.amazon.com/mobile-apps/b?ie=UTF8&node=2350149011>

Zen의 특허를 애플 컴퓨터사의 MP3플레이어인 iPod와 iPod nano가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였다. 2006년 8월 23일 애플 컴퓨터사는 1억 불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iPod 생산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림 8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MP3 플레이어 ZEN〉

타이푼 터치 테크놀로지와의 분쟁¹²⁾

2008년 6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타이푼 터치 테크놀로지는 애플 컴퓨터사를 자사의 터치 스크린 특허¹³⁾를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였고, 현재까지도 다른 업체까지 포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애플 대 HTC¹⁴⁾

2010년 3월 2일 애플 컴퓨터사는 HTC가 생산 판매하는 스마트 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자사의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미국 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소장에서 애플 컴퓨터사는 HTC가 자사의 특허 20건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애플 컴퓨터사의 스마트 폰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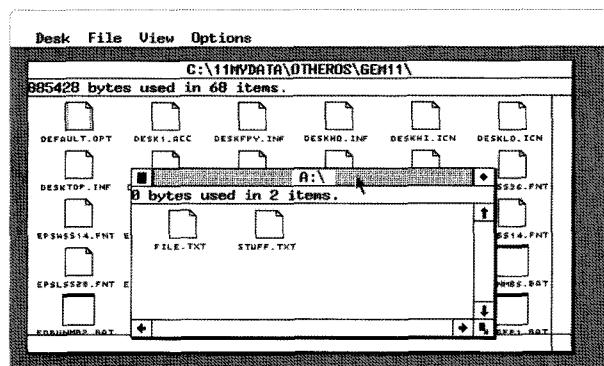
코닥 대 애플 컴퓨터/RIM¹⁵⁾

2010년 1월 코닥사는 애플 컴퓨터사의 아이폰과

리서치 인 모션(RIM)사의 스마트 폰인 블랙베리가 자사의 디지털 영상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미국무역위원회에 제소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기타 지식재산권 분쟁

GEM의 'look and feel' 소송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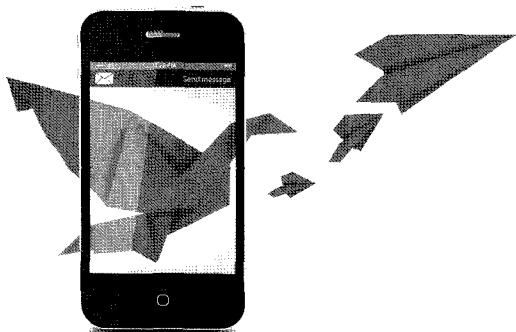
〈그림 9 GEM의 화면 구성〉

애플 컴퓨터사는 1984년 디지털 리서치사에서 발표한 GUI 환경의 GEM (graphical environment manager) 운영체제가 자사의 Mac OS 화면과 '보았을 때의 느낌' (look and feel)이 유사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보았을 때의 느낌'에 의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판결에 시초를 이룬다. 이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이 자사 아이폰의 외형이나 화면의 아이콘, 포장까지 카피했다는 애플사의 주장과 공통점이 많다. 다시 말해서 이번의 분쟁은 과거 애플사의 경험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애플 대 이머신(eMachines) 분쟁¹⁷⁾

1999년 애플 컴퓨터는 우리나라 업체를 비롯한 연

합 기업의 미국 수출품인 eMachines의 노트북 PC인 eOne이 자사의 iMac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으로 제소하여 승소한다. 이로써 2000년 이후 eMachine의 판매는 급감하였다.



스마트폰 지식재산권 분쟁

노키아 대 애플

국제특허분쟁을 시작하는 특허권자들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 폰 특허 분쟁은 시장 견제를 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애플의 스마트 폰인 아이폰3는 지난 2009년 10월 핀란드의 노키아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법원에 제소된 바 있다. 노키아에 의해 시작된 이 특허 분쟁은, 당시 휴대폰 세계 시장 점유율 3%대의 애플사가 노키아의 연간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며 상승세에 있는 것에 대한 견제책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소송 초반에 애플사는 자사의 특허들을 노키아가 침해한 것으로 여러 차례 맞소송을 진행하며,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비한 듯 아이폰3의 생산을 중단하고 아이폰4를 출시하였다.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 제소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이 소송은 2011년 6월부터 애플사가 노키아 측에 8억 유로의 손해배상과 향후 판매되는 아이폰 대당 8유로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협상 중에 있다.

애플 대 삼성

2011년 4월 15일 애플 컴퓨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이 자사의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¹⁸⁾하였다.

애플사가 침해를 주장하는 지재권은 터치스크린과 화면 동작에 관한 특허 7건, 디자인 3건, 트레이드 드레스권 3 건, 아이콘 상표 8건이다. 여타의 지재권 분쟁과 차이 나는 점은, 통신 기술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제3자가 직관적 으로 알아보기 쉬운 단순 기능, 외형, 아이콘의 모양이라 는 것이다. 이 사실은 애플측이 빠른 소송결과를 위해 판단이 쉬운 권리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애플 컴퓨터가 제시한 7건의 특허들 중 4건의 특허들이 다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활용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사 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분쟁에서 이슈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 소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소송이다. 상품의 이미지나 전체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 하며, 이는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심지어 특정한 판매기법 등과 같은 고유의 식별력을 가지는 특성을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 지방법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물건의 형태, 외형적 느낌, 서비스 시설의 외형적 느낌, 판매 방법까지 포함한다.

- 12) <http://www.forbes.com/feeds/afx/2008/06/24/afx5145899.html>
- 13) <http://www.i4u.com/22222/typhoon-touch-technologies-adds-apple-and-9-others-dell-suit>
- 14) <http://www.engadget.com/2010/03/02/apple-vs-htc-a-patent-breakdown/>
- 15)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48704281204575002891721364642.html>
- 16) http://news.cnet.com/Apple-sues-eMachines-for-iMac-look-alike/2100-1040_3-230054.html
- 17) http://news.cnet.com/Apple-settles-suits-over-iMac-knockoffs/2100-1040_3-237717.html
- 18) <http://qualpat.com/files/board/apple-samsung-lawsuit.pdf>

애플 컴퓨터사의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한 것으로 2011년 4월 27일 맞제소를 하였으나, 2011년 6월 27일자로 취하되었고, 다시 5건의 특허를 애플 컴퓨터사가 침해한 취지의 소장¹⁹⁾을 2011.6.29자로 텔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외에도 양측의 소송은 독일, 일본, 네덜란드, 호주 및 우리나라로 확대되어 진행 중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마트폰 분쟁의 전망

스마트 폰 OS의 추이

스마트폰 기술에서 컴퓨터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이고, 이를 위한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는 또 다른 기술 경쟁의 대상이 되어 있다. 현재 애플 컴퓨터사의 스마트 폰은 독자적인 운영체제인 iOS를 사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내 업계는 구글사의 안드로이드(Android)라는 개방형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점은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애플은 70년대 후반 애플 컴퓨터를 출시하면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부상하였지만, 우리나라와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복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80년대 초 IBM PC가 소개되어 큰 인기를 끌자, 애플은 이에

대응한 매킨토시 PC를 제품화하였다. 매킨토시 PC는 과거 애플 컴퓨터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운영체제(OS)와 하드웨어를 비공개로 하여 제품화하였다.

이에 반해 IBM PC는 출시 초기부터 내부 회로를 공개하고, 개발 툴이 상용화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OS로 채택하였다. 세계 각국의 연구 개발자들은 IBM PC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오늘날의 PC로 발전시켰으며, 매킨토시는 폐쇄적인 정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방형 운영체제에서는 제3자들에 의한 응용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독자적인 운영체제는 특정 소수만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미래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가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을 2011년 39.5%에서 2015년 4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iOS는 2011년 15.7%에서 2015년 15.3%로 전망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다른 국제시장조사기관인 Gartner도 안드로이드의 시장점유율을 2011년 38.5%, 2015년 48.8%, iOS는 2011년 19.4%에서 2015년 19.5%로 전망하고 있어 실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애플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협상을 위한 분쟁의 가능성

통상의 기업 거래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경우 담당자와 결정권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부탁하는 쪽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미 진행 중인 계약 거래를 변경하거나 파기하고 싶은 경우에 특히 분쟁이 활용될 수 있다.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일단 제소하여 협상과정에서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마지못해 합의하는

듯이 진행하는 전략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애플의 아이폰은 자체 공장이 없어 여러 제조사의 부품을 구매하여 대만의 한 회사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초 아이폰4의 후속 모델로 기획되었던 아이폰5가 아직 출시되지 못하고 약간 개량된 모델로 아이폰 4S가 출시된 것을 보면, 애플 컴퓨터사는 핵심 부품 수급에 관한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이템(일부)	회사	국적
소프트웨어/디자인	애플	미국
조립	Foxconn	대만
프로세서 칩	삼성	한국
터치스크린	Balda	독일
블루투스 칩	Cambridge Silicon Radio	영국
칩 생산	TSMC, UMC	대만
브로드밴드 칩	Infineon Technology	독일
WIFI 칩	Marvell	미국
터치스크린 제어 칩	Broadcom	미국
CMOS 칩	Micron	미국
NOR 플래시 IC	Intel, SST	미국
디스플레이 구동 칩	National Semi, Novatek	미국, 대만
케이스, 기계부품	Catcher, Foxconn Tech	대만
카메라 렌즈	Largan Precision	대만
카메라 모듈	Altus-Tech, Primax, Lite On	대만
배터리 충전기	Delta Electronics	대만
발진기용 크리스탈	TXC	대만
수동소자	Cyntec	대만
콘넥터, 케이블	Cheng Uei, Entery	대만

애플 아이폰의 생산을 위한 아이템들과 공급업체

시장 점유를 위한 전략적 분쟁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플 컴퓨터사는 창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왔다. 게다가 애플 컴퓨터사가 분쟁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특징이 있다. 스티브 잡스는 창업 시부터 언론을 잘 이용한 인물로서, 애플 컴퓨터사는 분쟁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는 광고 효과를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만 불의 비용을 들인 소송은, 수백만 불의 광고 효과를 가져오며 이로부터 시장 확보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지명도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나라 제조사들의 스마트 폰의 입지가 유명무실해지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끝으로

이번 지식재산권 분쟁은 애플측이 내세운 권리가 스마트 폰의 외형적인 요소에 치중되어 있어, 스마트 폰 기술의 통신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업체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의 대응 소송은 통신의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를 제시하고 있어서, 혹 크로스 라이선스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어렵게 확보한 원천 기술을 애플 컴퓨터사에 그냥 제공할 우려도 있다. 또한 ‘보았을 때 느낌(look and feel)’의 침해로 애플사가 제소되었던 사례라면, 국내에서 먼저 유사한 디자인이 출시된 점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애플 컴퓨터사가 제시한 특허들은 다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활용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참조가 필요하다.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하여 단기간에 win-win 으로 끝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통신기술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 기업과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간의 이번 분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지배 논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도출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업계에서는 스마트 폰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보다 많은 기술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디자인 관련 기술을 보다 더 개발하고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미래의 이동통신기술 경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1. 11